

의안번호	2218299
의 퇴 인	염태영의원
회 답 일	2026.09.03.
추 계 번호	26C4466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걷기여행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6,800만원, 2031년 1,8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2억 4,000만원(연평균 4,800만원)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150	-	-	-	-	150	30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 운영 (안 제19조)	18	18	18	18	18	90	18
추가재정소요	168	18	18	18	18	240	48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1. 걷기여행길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걷기여행의 현황 및 전망 3. 걷기여행길의 평가, 제도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 4. 걷기여행길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5. 그 밖에 걷기여행길의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9조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은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9조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 1. 걷기여행길의 편의시설, 탐방안내시스템 등 기반 조성 2. 걷기여행길의 조사·홍보·이용 활성화 3. 걷기여행길의 안전·환경 관리, 정보망 구축 4. 걷기여행길 관련 인력양성과 민관협력 5. 그 밖에 걷기여행길의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12조 (안전관리)	관리기관과 관리운영전담기관은 걷기여행길의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재난·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대비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4	안 제13조 (환경관리)	관리기관은 걷기여행길 구성에 있어 주변경관의 조화를 고려하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 자재와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제1항) 관리기관과 관리운영전담기관은 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 통행 제한이나 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그 사유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14조 (품질 인증제도)	국가는 걷기여행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15조 (이용활성화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축제, 문화·체험 프로그램, 해설·교육, 국내외 홍보 및 국제 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16조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운영전담기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18조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19조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	걷기여행길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9조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	정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및 사업 조정 3.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통합 기준 4.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자문 5.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6. 걷기여행길의 안전·환경 관리, 정보망 구축 7. 그 밖에 걷기여행길의 활성화 및 정책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10	안 제20조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정책협의체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1항)	의무규정
11	안 제21조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 설치)	걷기여행길 주요 정책의 집행, 걷기여행길의 통합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제1항)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제2항) 1. 걷기여행길 정보망 구축 및 운영 2. 걷기여행길 조사·연구 사업 3. 걷기여행길 인증제, 체험프로그램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국제교류 및 국내외 홍보, 브랜드 개발 5. 걷기여행길 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 6. 전문 인력 양성 사업 7. 지자체·민간단체 지원 8. 정책협의체에서 심의·조정한 사업 9. 그 밖에 걷기여행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의무규정
12	안 제22조 (걷기여행길 정보망 구축)	통합지원센터는 걷기여행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기여행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13	안 제23조 (관리운영전담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제1항) 관리운영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2항) 1. 걷기여행길 조사 2. 걷기여행길의 조성 및 시설물 설치, 상시 관리 및 유지·보수 3. 걷기여행길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인증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3조 (관리운영전담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운영전담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	· (추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중인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함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로 수립하는 사항으로 통상적인 행정업무 내에서 처리가능할 것으로 예상
2	안 제12조(안전관리) 안 제13조(환경관리)	×	· (제3호) 현재 정부는 걷기여행길에 대한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를 시행 중이나, 제정안 시행 후 국가·광역·지역 걷기여행길의 지정대상이 확대되거나 현행 관리수준을 초과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지정대상 길의 수·연장, 안전시설 종류·설치 기준 및 단가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4262-309) 사업 중 「걷기여행 활성화」(2026년 3,558백만원), 코리아둘레길 관리,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노선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도로교통사고예방여건조성」 사업(2026년 1,636백만원), 보행안전 관련 현장점검·홍보·제도운영 및 관련 용역 등을 수행 중임
3	안 제14조 (품질 인증제도)	×	· (제3호)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인증기준 마련, 현장심사 및 인증관리 등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증대상·기준·절차·주기 및 사업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아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기 곤란함
4	안 제15조 (이용활성화 사업) 안 제16조 (재정 지원) 안 제18조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 (제3호) 정부는 걷기여행 관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정안의 시행으로 현행사업의 지원대상·범위를 초과하여 관리운영전담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 기관 수·지원범위·단가 등이 정해지지 않아 확대분을 추산하기 곤란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4	안 제15조 (이용활성화 사업) 안 제16조 (재정 지원) 안 제18조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4262-309)」 사업 중 「걷기여행 활성화」(2026년 3,558백만원), 코리아둘레길 관리,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국민 걷기 프로그램 등을 실시 중(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220백만원) 걷기여행길 운영(1,622백만원), 걷기여행길 운영비에는 코리아둘레길 모니터링 및 안내사무국 운영(895백만원) 홍보·마케팅 및 국민 걷기 프로그램 등이 포함
5	안 제19조 (걷기여행길 국가정책 협의체) 안 제20조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추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
6	안 제21조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 설치) 안 제22조 (걷기여행길 정보망의 구축) 안 제23조 (관리운영전담기관)	×	· (제3호) 현재 정보는 걷기여행길과 관련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나, 제정안에 따라 국가통합지원센터의 신규 조직·인력, 정보망의 추가 구축·확대, 국가·광역 지역걷기여행길 추가 지정에 따른 관리운영전담기관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한 비용은 센터의 조직·정원, 기존 시스템의 이관·통합 여부, 추가 지정되는 걷기여행길의 수·연장 및 지원단가 등이 결정된 후 추산가능한 사항으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기 곤란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걷기여행 활성화」에 2026년 3,558백만원을 편성하여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코리아둘레길 노선 모니터링, 안내사무국, 프로그램·홍보 및 두루누리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정보망사업(코리아모빌리티(두루누리)): 누리집·앱 운영·유지보수 및 홍보를 실시(2026년 각각 477백만원) 중이며, 걷기여행길 운영비 1,622백만원 중 코리아둘레길 모니터링 및 안내사무국 운영비(895백만원)가 포함되어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한다는 부칙 규정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안전부 내에서 추진 중인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
 - (유사사례)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어, 동 사업방식과 사업비를 준용함
 - 2026년도 「도로교통사고예방여건조성」 사업에 제2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지원비 150백만원을 편성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걷기여행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첫 해인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기본계획수립 주기: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5년으로 가정함
 - 단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150백만원으로 가정함

[표 2] 걷기여행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150	-	-	-	-	150

주: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 운영(안 제19조 및 안 제20조)

- 제정안에 따라 걷기여행길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를 두는 경우, 협의체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은 정책협의체의 구체적인 위원 수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을 대통령

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사 위원회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비용을 추산함

- 수당 지급 대상 민간위원은 15인, 회의 개최 횟수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로 가정함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건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¹⁾

□ 이상의 가정에 따라 국무총리소속의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3]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국가정책협의체 운영 (안 제19조 및 제20조)	18	18	18	18	18	90

주: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걷기여행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본계획 수립(A)	150	-	-	-	-	150
국가정책협의체 운영(B)	18	18	18	18	18	90
추가재정소요(A+B)	168	18	18	18	18	240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로 편성(기획예산처(2026)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